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3-08-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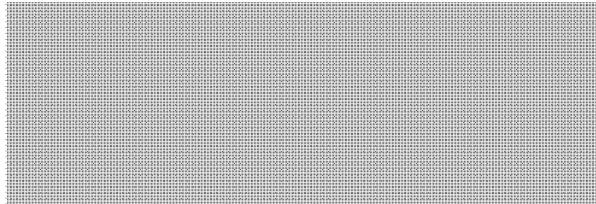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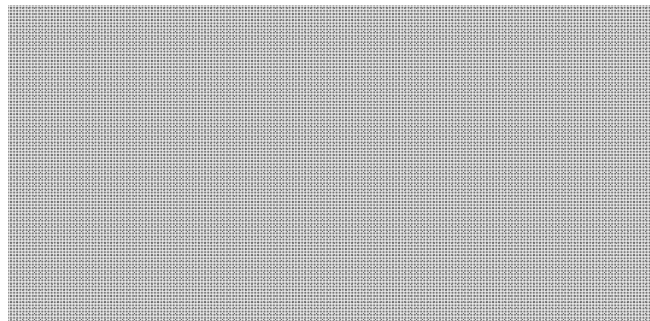
사 건 2001두461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1. 5. 8. 선고 2000누8693 판결

판 결 선 고 2003. 3.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에 관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나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정보에 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영업비밀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한 1997년도 및 1998년도의 서울특별시의 예산서 세항과목상의 보도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서무관리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서무관리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서무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지출할 당시에 작성된 지출증빙(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이를 공개할 경우 그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관련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정보 중 법 제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개인식별정보’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 제7조 제1항 제6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정보 중 피고가 주최한 각종 행사 관련 지출증빙에 포함된 행사참석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나 피고가 선물, 사례, 격려 및 위로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 관련 지출증빙에 포함된 금품수령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 중 행사참석자 또는 금품수령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위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는 ‘공



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정보 중 행사참석자 또는 금품수령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도 모두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법 제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미보유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1997년도 및 1998년도의 서울특별시 예산 중 판시 세항과목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한 지출증빙을 모두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위 세항과목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한 지출증빙이 작성되어 이를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라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는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에 원래부터 포함되지 않다고 전제한다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정보 중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만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따라서 원심으로서 원고가 공개를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 중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구분하여,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공개를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 중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 전부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원고가 공개를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 정보 중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의 범위 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소송에 있어서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강신욱 _____

주 심 대법관 변재승 _____

 대법관 윤재식 _____

 대법관 고현철 _____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3-08-06

